## 6. 통 지



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(심판회부간주의 경우에도 같다)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(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).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도 같다(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1항).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때에는 법무부장관, 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(헌법재판소법 제73조 제2항).